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3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박정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3312

발의연월일: 2024. 8. 28.

발 의 자:박 정·염태영·김문수

김남근 • 박홍근 • 박정현

이기헌 · 오세희 · 서영교

이용선 · 김남희 · 박주민

이워택 • 황정아 의위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는 채무자 등의 효율적 회생을 목적으로 파산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파산 등을 이유로 채무자가 취업제한 등의 불이익 처분을받지 않도록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고 있음.

그러나 여전히 다수의 현행법이 파산선고 자체를 불성실 또는 부도 덕의 근거로 삼아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경우 취업 등의 결격사 유로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불합리한 차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법률 중 파산선고 등을 이유로 결격조항을 두고 있는 33개 법률을 일괄 개정하여 파산 등으로 인한 불합리한 차별적 취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려는 것임.

법률 제 호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3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제1조(「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 단서 중 "제31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를 "제31조제1호·제3호 또는 제4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31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를 "제31조제1호·제3호 또는 제4호"로 한다.

제31조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를 "제1호·제3호 또는 제4호"로 한다.

제32조제1항제15호 본문 중 "제31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제31조 제1호·제3호"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제31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제31조제1호·제3호 또는 제4호"로 한다.

제35조제1항제8호 본문 중 "제31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제31조제1호·제3호"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제31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제31조제1호·제3호 또는 제4호"로 한다.

제2조(「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개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제1호 또는 제2호"를

"제1호"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를 "제1호·제3호 또는 제4호"로 한다.

제25조제1항제3호 본문 중 "제24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6호의 어느 하나"를 "제24조제1호·제3호·제4호 또는 제6호"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제24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를 "제24조제1호·제3호 또는 제4호"로 한다.

제3조(「고용보험법」의 개정) 고용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9조제4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제4조(「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피성년후견인

제5조(「공인노무사법」의 개정) 공인노무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호를 삭제한다.

제11조제3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6조(「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의 개정)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10호 중 "제1호부터 제9호"를 "제1호 및 제3호부터 제9호"로 한다.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29조제1호부터 제8호"를 "제29조제1호 및 제3호부터 제8호"로 한다.

제7조(「기상산업진흥법」의 개정) 기상산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제1호부터 제5호"를 "제1호 및 제3호부터 제5호"로 한다.

제8조제1항제6호 단서 중 "제7조제1호부터 제5호"를 "제7조제1호 및 제3호부터 제5호"로 한다.

제8조(「대기환경보전법」의 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9조의2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제1호 또는 제2호"를 "제1호"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하나"를 "제1호·제3호 또는 제4호"로 한다.

제76조의11제5항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를 "제1호·제3호 또는 제4호"로 한다.

제9조(「먹는물관리법」의 개정) 먹는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제1호 또는 제2호"를 "제1호"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제1호부터 제5호"를 "제1호 및

제3호부터 제5호"로 한다.

제24조제2호를 삭제한다.

제48조제1항제8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및 가목 중 "제2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를 각각 "제24조제1호 또는 제3호"로 한다.

제10조(「물환경보전법」의 개정) 물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의7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제1호 또는 제2호" 를 "제1호"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하나"를 "제1호·제3호 또는 제4호"로 한다.

제63조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제63조제1호·제2호"를 "제63조제1호"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를 "제1호·제3호 또는 제4호"로 한다.

제6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제6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를 "제63조제1호·제3호 또는 제4호"로 한다.

제11조(「산업안전보건법」의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5조제3항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제1호 또는 제2호"를 "제1호"로 한다.

제154조제5호 중 "제145조제3항제1호부터 제5호"를 "제145조제3항제 1호 및 제3호부터 제5호"로 한다. 제12조(「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7조제6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제13조(「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의 개정)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제1호 또는 제2호"를 "제1호"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를 "제1호·제3호 또는 제4호"로 한다.

제43조제1항제5호 본문 중 "제4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제42조제1호·제3호"로 한다.

제14조(「석면안전관리법」의 개정) 석면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3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를 "제1호 또는 제3호"로 한다.

제30조의6제1항제4호 본문 중 "제30조의3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 중 어느 하나"를 "제30조의3제1호 또는 제4호"로 한다.

제15조(「석면피해구제법」의 개정) 석면피해구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4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제16조(「소음·진동관리법」의 개정) 소음·진동관리법 일부를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제1호 또는 제2호"를 "제1호"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를 "제1호·제3호 또는 제4호"로 한다.

제17조(「수도법」의 개정) 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4항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제24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제24조제4항제1호"로 한다.

제25조제1항제2호 중 "제24조제4항제1호부터 제5호"를 "제24조제4항 제1호 및 제3호부터 제5호"로 한다.

제25조의2제2항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제25조의2제2 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제25조의2제2항제1호"로 한다.

제18조(「실내공기질 관리법」의 개정)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3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제1호 및 제2호"를 "제1호"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를 "제1호·제3호 또는 제4호"로 한다.

제11조의4제1항제3호 본문 중 "제11조의3제1호부터 제5호"를 "제11조의3제1호 및 제3호부터 제5호"로 한다.

제19조(「악취방지법」의 개정) 악취방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16조의5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제1호 또는 제2호" 를 "제1호"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하나"를 "제1호·제3호 또는 제4호"로 한다.

제16조의6제1항제6호 본문 중 "제16조의5제1호부터 제3호와 제5호의 어느 하나"를 "제16조의5제1호·제3호 또는 제5호"로 한다.

제20조(「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3제2호를 삭제한다.

제16조의8제1항제2호 중 "제16조의3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를 "제16조의3제1호 또는 제3호"로 한다.

제16조의9제1항 후단 중 "제16조의3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를 "제16조의3제1호 또는 제3호"로 한다.

제60조제2호를 삭제한다.

제21조(「지하수법」의 개정) 지하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제1호부터 제5호"를 "제1호 및 제3호부터 제5호"로 한다.

제25조제1항제4호 단서 중 "제23조제1호부터 제5호"를 "제23조제1호 및 제3호부터 제5호"로 한다.

제28조제1호 중 "제2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를 "제23 조제1호·제3호 또는 제4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제23조제1 호 또는 제2호"를 "제23조제1호"로 한다.

제22조(「직업안정법」의 개정) 직업안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 중 "제38조제1호·제2호·제4호"를 "제38조제1호·제4호"로 한다.

제38조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제1호부터 제6호"를 "제1호 및 제3호부터 제6호"로 한다.

제23조(「토양환경보전법」의 개정) 토양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3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제1호 또는 제2호" 를 "제1호"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를 "제1호·제3호 또는 제4호"로 한다.

제24조(「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제25조(「폐기물관리법」의 개정) 폐기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4제8항 전단 중 "제26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제26조제1호·제3호·제4호"로 한다.

제26조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제1호부터 제5호"를

"제1호, 제3호부터 제5호"로 한다.

제26조(「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피성년후견인

제27조(「하수도법」의 개정) 하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3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제1호부터 제4호까 지의 어느 하나"를 "제1호·제3호 또는 제4호"로 한다.

제19조의4제1항제7호 본문 중 "제19조의3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제19조의3제1호·제3호"로 한다.

제19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9조의3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를 "제19조의3제1호·제3호 또는 제4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9조의3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를 "제19조의3제1호·제3호 또는 제4호"로 한다.

제20조의3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제1호 또는 제2호"를 "제1호"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하나"를 "제1호·제3호 또는 제4호"로 한다.

제20조의4제1항제6호 본문 중 "제20조의3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제20조의3제1호·제3호"로 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20조의3제1호부터 제4호

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를 "제20조의3제1호·제3호 또는 제4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20조의3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를 "제20조의3제1호·제3호 또는 제4호"로 한다.

제48조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제1호 또는 제2호"를 "제1호"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를 "제1호·제3호 또는 제4호"로 한다.

제49조제1항제9호 본문 중 "제48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제48조제1호·제3호"로 한다.

제54조제1항제10호 본문 중 "제48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제48조제1호·제3호"로 한다.

제28조(「화학물질관리법」의 개정) 화학물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제1호 또는 제2호"를 "제1호"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를 "제1호 또는 제3호"로 한다.

제35조제1항제5호 단서 중 "제30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를 "제30조제1호 또는 제3호"로 한다.

제37조제1항 후단 중 "제30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하나"를 "제30조제1호 또는 제3호"로 한다.

제29조(「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의 개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4항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1호 또는 제2호"를 "제1호"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어느 하나"를 "제1호·제3호 또는 제4호"로 한다.

제16조의4제2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30조(「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를 "제1호·제3호 또는 제4호"로 한다.

제31조(「환경분쟁 조정법」의 개정) 환경분쟁 조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제32조(「환경영향평가법」의 개정) 환경영향평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제1호 또는 제2호"를 "제1호"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를 "제1호·제3호 또는 제4호"로 한다.

제63조제2항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제1호 또는 제2호"를 "제1호"로 한다.

제33조(「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3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제1호 또는 제2호" 를 "제1호"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를 "제1호·제3호 또는 제4호"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결격조항 정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조치 등은 이 법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유효한 것으로 본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9조(허가・신고에 따른 지위	제29조(허가ㆍ신고에 따른 지위
의 승계) ① 재활용신고자 또	의 승계) ①
는 가축분뇨관련영업자가 그	
영업 또는 시설의 전부를 양도	
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인	
경우로서 합병된 때에는 그 양	
수인 사속인 또는 합병 후 존	
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종전의 재활	
용신고자 또는 가축분뇨관련영	
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다만,	
가축분뇨관련영업을 양수한 자	
또는 가축분뇨관련영업자인 법	
인과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	
인이 제31조제1호부터 제4호까	제31조제1호·제3호 또는
<u>지의 어느 하나</u> 에 해당하는 경	<u> 제4호</u>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라 가축분뇨관련	③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	
인이 제31조제1호부터 제4호까	<u>제31</u> 조제1호·제3호 또는

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그지위를 승계한 법인이 제31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합병일부터 6개월 이내에 다른 사람에게 이를 양도하거나 그 임원을 개임하여야 한다.

④ (생략)

-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 28조에 따른 가축분뇨관련영업 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 1. (생략)
 -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u>아니한 자</u>
 - 3. 4. (생략)
 - 5. 임원 중에 <u>제1호부터 제4호</u> <u>까지의 어느 하나</u>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 제32조(허가의 취소 등) ① 시장 지 ·군수·구청장은 가축분뇨관 런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 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제4호	-
	-
	-
	-
	-
④ (현행과 같음)	
제31조(결격사유)	-
	-
	-
1. (현행과 같음)	
<u><삭 제></u>	
3. • 4. (현행과 같음)	
5 <u>제1호·제3호 또</u>	
는 제4호	-
제32조(허가의 취소 등) ①	-
	-
	-
	-
	-
	-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수 있다. 다만, 제1호·제3호 또는 제1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 1. ~ 14. (생략)
- 15. 제31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 우. 다만, 임원 중에 제31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 하는 자가 있는 법인의 경우 6개월 이내에 해당 임원을 개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16. ~ 19. (생략)

② (생략)

제35조(등록의 취소 등) ① 시장 지 · 군수 · 구청장은 설계 · 시공 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있다. 다만, 제1호 · 제2호 또는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u>.</u>
1. ~ 14. (현행과 같음)
15. <u>제31</u> 조제1호 · 제3호
제31조제1호·
제3호 또는 제4호
16. ~ 19.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35조(등록의 취소 등) ①
·
•

- 1. ~ 7. (생략)
- 8. 제34조제7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31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임원 중 제31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되는 자가 있는 경우 6개월 이내에 해당 임원을 개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9. (생략)
- ② (생략)

1. ~ 7. (현행과 같음)
8
<u>제31조제1호·제3호</u>
<u>제31조제1호·제3호</u>
또는 제4호
9.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4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제24조(결격사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건	
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	
을 수 없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u><삭 제></u>
아니한 자	
3. • 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5.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가	5
취소된 자(제1호 또는 제2호	<u>স্বাহ</u> ি
에 해당하여 건설폐기물 처리	
업의 허가가 취소된 자는 제	
외한다)로서 그 허가가 취소	
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	
한 자	
6.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4호	6 <u>제1호·제3호 또</u>
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는 제4호
사람이 있는 법인	
제25조(허가취소 등) ① 시·도지	제25조(허가취소 등) ①
사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 1. 2. (생략)
- 3. 제24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법인으로서 2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경우 또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의 상속인이 제24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이내에 상속받은 건설폐기물 처리업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 6. (생략)

② ~ ⑦ (생 략)

- .
1. • 2. (현행과 같음)
3. <u>제24조제1호·제3호·제4호</u>
<u>또는 제6호</u>
<u>제24</u> 조제1호·제
<u> 3호 또는 제4호</u>
4. ~ 6. (현행과 같음)

② ~ ⑦ (현행과 같음)

고용보험법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9조(고용보험심사위원회) ①	제99조(고용보험심사위원회) ①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4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에 임명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 피한정후견인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
또는 파산의 선고를 받고 복	<u>견인</u>
권되지 아니한 사람	
2. · 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⑤ ~ ⑨ (생 략)	⑤ ~ ⑨ (현행과 같음)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8조(주민협의체의 구성기준	제28조(주민협의체의 구성기준
및 기능 등) ① 설치・운영기	및 기능 등) ①
관은 주민대표 및 주민대표와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관할 지	
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한 전	
문가로 주민협의체(이하 "주민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주민	
협의체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선고	1. 피성년후견인
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	
<u>라</u>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공인노무사법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	제4조(결격사유)
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인	
노무사가 될 수 없다.	
1. • 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	<u><</u> 삭 제>
권(復權)되지 아니한 사람	
4. ~ 8. (생 략)	4. ~ 8. (현행과 같음)
제11조(직무보조원) ①・② (생	제11조(직무보조원) ①・② (현행
략)	과 같음)
③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③
해당하는 자는 직무보조원이	
될 수 없다. <u>다만, 같은 조 제3</u>	<u><단서 삭제></u>
호에 따른 파산선고를 받은 자	
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9조(결격사유) 제28조에 따른	제29조(결격사유)
지정직업훈련시설을 지정받으	
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8조에 따	
른 지정을 받을 수 없다.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u><삭 제></u>
아니한 사람	
3. ~ 9. (생 략)	3. ~ 9. (현행과 같음)
10. 법인의 임원 중 <u>제1호부터</u>	10 <u>제1호 및</u>
<u>제9호</u> 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	<u>제3호부터 제9호</u>
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제31조(지정직업훈련시설의 지정	제31조(지정직업훈련시설의 지정
취소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취소 등) ①
제28조에 따른 지정직업훈련시	
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면 그 시정을 명하거	
나 그 지정의 취소 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직업능	
력개발훈련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또는 제4호	<u>제</u>

(제29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 야 한다.

1.	~	9.	(생	략)

② (생 략)

29조제1호 및 제3호부터 제8호-
1. ~ 9.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기상산업진흥법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	제7조(결격사유)
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기상	
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u><삭 제></u>
아니한 사람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6. 임원 중 <u>제1호부터 제5호</u> 까	6 <u>제1호 및 제3호부터</u>
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u>제5호</u>
사람이 있는 법인	
제8조(등록의 취소 등) ① 기상청	제8조(등록의 취소 등) ①
장은 기상사업자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기	
상사업자가 제1호부터 제3호까	
지 및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	
하여야 한다.	,
1. ~ 5의2. (생 략)	1. ~ 5의2. (현행과 같음)
6.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6

해당하는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에 제7조제1호부터 제 <u>5호</u>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2개월 이내 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하 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생략)

② ~ ④ (생 략)

	·
	·-제7조제1호 및 제
3호부터 저	<u> 5호</u>
	·
7. (현행과 7	<u> </u>

② ~ ④ (현행과 같음)

대기환경보전법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9조의2(결격 사유) 다음 각 호	제69조의2(결격 사유)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전문정비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u><삭 제></u>
<u>아니한 자</u>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제69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	4
(이 조 <u>제1호 또는 제2호</u> 에	<u>সা1ই</u>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	
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지	
나지 아니한 자	
5. 임원 중 제1호부터 제4호까	5 <u>제1호·제3호 또는</u>
<u>지의 어느 하나</u> 에 해당하는	<u>제4호</u>
사람이 있는 법인	
제76조의11(냉매회수업의 등록)	제76조의11(냉매회수업의 등록)
① ~ ④ (생 략)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5
해당하는 자는 냉매회수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u><삭 제></u>

아니한 사람

- 3. 4. (생략)
- 5. 임원 중 <u>제1호부터 제4호까</u> <u>지의 어느 하나</u>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3. • 4. (현행과 같음)

5. -----<u>제1호·제3호 또는</u> <u>제4호</u>-----

먹는물관리법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6조(결격 사유) 다음 각 호의	제16조(결격 사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	
15조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	
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u><삭 제></u>
<u>아니한 자</u>	
3. • 4. (생 략)	3. • 4. (현행과 같음)
5. 제17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	5
(이 조 <u>제1호 또는 제2호</u> 에	<u>제1호</u>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	
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지	
나지 아니한 자	
6. 임원 중 <u>제1호부터 제5호</u> 까	6 <u>제1호 및 제3호부터</u>
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	<u>제5호</u>
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_
제24조(영업허가 등의 제한) 다음	제24조(영업허가 등의 제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6항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할 수 없다.	

- 1. (생략)
- 2. 영업을 하려는 자가 파산선

 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일 때

3. ~ 6. (생략)

- 제48조(허가의 취소 등) ① 시· 도지사는 먹는물관련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면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장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 4호와 제8호에 해당하면 영업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장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 1. ~ 7. (생략)
 - 8. 제2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러하지 아니하다.
 - 가. 법인의 임원 중 <u>제24조제</u>
 <u>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u>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삭 제>
3. ~ 6. (현행과 같음) 제48조(허가의 취소 등) ①
 1. ~ 7. (현행과 같음) 8. <u>제24조제1호 또는 제3호</u>
 기 <u>제24조제</u>
<u>1호 또는 제3호</u>

1. (현행과 같음)

자가 있는 경우에 2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경우

나. (생 략)

9. ~ 12. (생 략)

② ~ ④ (생 략)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나. (현행과 같음)

9. ~ 12.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물환경보전법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8조의7(결격사유) 다음 각 호	제38조의7(결격사유)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u><삭 제></u>
<u>아니한 자</u>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제38조의9에 따라 등록이 취	4
소(이 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u>মা1ই</u>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	
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지	
나지 아니한 자	
5. 임원 중 제1호부터 제4호까	5 <u>제1호·제3호 또는</u>
<u>지의 어느 하나</u> 에 해당하는	<u> </u>
사람이 있는 법인	
제6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제63조(결격사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폐	
수처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	
다.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u><삭 제></u>
아니한 자	

- 3. 제64조에 따라 폐수처리업의 허가가 취소(제63조제1호·제 2호 또는 제6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여 허가가 취소된 경우 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지 나지 아니한 자
- 4. (생략)
- 5.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사람이 있는 법인

제65조(권리・의무의 승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른 종전 폐수처리업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이 경우 제6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양수인・상속인 또는법인은 3개월 이내에 그 사업을 다른 사람 또는 법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1. ~ 3. (생 략)

② (생략)

3 <u>제63조제1호</u>
 <u>제63조제1호·</u> 제3호 또는 제4호
 1. ~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산업안전보건법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5조(지도사의 등록) ①・②	제145조(지도사의 등록) ①・②
(생 략)	(현행과 같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③
해당하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u><</u> 삭 제>
아니한 사람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6. 제154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	6
(이 항 <u>제1호 또는 제2호</u> 에	<u>মা1ই</u>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	
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지	
나지 아니한 사람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154조(등록의 취소 등) 고용노	제154조(등록의 취소 등)
동부장관은 지도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할	때에는	ユ	등록
을 취소	하여야	한다.		

- 1. ~ 4. (생 략)
- 5. <u>제145조제3항제1호부터 제5</u>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 에 해당하게 된 경우
- 6. ~ 8. (생략)

- 1. ~ 4. (현행과 같음)
- 5. <u>제145조제3항제1호 및 제3호</u> 부터 제5호----
- 6. ~ 8. (현행과 같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7조(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	제107조(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
위원회) ① ~ ⑤ (생 략)	위원회) ① ~ ⑤ (현행과 같
	음)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6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에 임명	
될 수 없다.	,
1. 피성년후견인 • 피한정후견인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	<u>견인</u>
지 아니한 사람	
2. • 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⑦ ~ ⑩ (생 략)	⑦ ~ ⑩ (현행과 같음)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2조(시험・검사기관의 결격사	제42조(시험·검사기관의 결격사
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해당하는 자는 시험・검사기관	
으로 지정받을 수 없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u><삭 제></u>
아니한 자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제43조제1항에 따라 시험・	4
검사기관의 지정이 취소(이	
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	<u>제1호</u>
하여 지정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자로서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4호	5 <u>제1호·제3호 또</u>
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u>는 제4호</u>
자가 있는 법인	
제43조(시험・검사기관의 지정	제43조(시험·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 ① 환경부장관은 시	취소 등) ①
험・검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 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3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 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 4. (생 략)
- 5. 제4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5호에 해당하게 된 경 우. 다만, 제42조제5호에 해당 하는 경우에 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하는 경우 는 제외한다.
- 6. 7. (생략)
- ②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u>제42조제1호 · 제3호</u>
,
,
6. • 7.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석면안전관리법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0조의3(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제30조의3(등록의 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등	
록을 할 수 없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u><삭 제></u>
아니한 자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3호	4 <u>제1호 또는 제3호</u>
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_
제30조의6(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제30조의6(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등록 취소 등) ① 시·도지사	등록 취소 등) ①
는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	
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	
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	
다. 다만, 제1호·제2호·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 4. 제30조의3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 게 된 경우. 다만, 같은 조 제4호에 해당하는 법인으로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결격사유가 없는 임원으로 바꾸어 선임한 경우는 제외한다.
- 5. 6. (생략)
- ②·③ (생 략)

4. 제30조의3제1호 또는 제4호-
5. • 6.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석면피해구제법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9조(석면피해구제재심사위원	제39조(석면피해구제재심사위원
회) ① ~ ③ (생 략)	회)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4
해당하는 사람은 재심사위원회	
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 피한정후견인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	<u>견인</u>
지 아니한 사람	
2. • 3. (생략)	2.•3. (현행과 같음)
⑤ ~ ⑦ (생 략)	⑤ ~ ⑦ (현행과 같음)

소음 · 진동관리법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2조(결격 사유) 다음 각 호의	제42조(결격 사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확	
인검사대행자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	<u><삭 제></u>
되지 아니한 자	
3. 제43조에 따라 확인검사대행	3
자의 등록이 취소(이 조 <u>제1</u>	<u>제1</u>
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등	<u>\$</u>
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	
다)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	
한 자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임원 중 제1호부터 제4호까	5 <u>제1호·제3호 또는</u>
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	<u>제4호</u>
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수도법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4조(정수시설운영관리사) ①	제24조(정수시설운영관리사) ①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4
해당하는 사람은 정수시설운영	
관리사가 될 수 없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u><삭 제></u>
아니한 사람	
3. • 4. (생 략)	3. • 4. (현행과 같음)
5. 제25조에 따라 자격이 취소	5
(<u>제24조제4항제1호 또는 제2</u>	<u>제24조제4항제1호</u>
호에 해당하여 자격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3	
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⑤ ~ ⑨ (생 략)	⑤ ~ ⑨ (현행과 같음)
제25조(정수시설운영관리사의 자	제25조(정수시설운영관리사의 자
격 취소 등) ① 환경부장관은	격 취소 등) ①
정수시설운영관리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여 야 한다.

- 1. (생략)
- 2. 제24조제4항제1호부터 제5호 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 3. 4. (생략)
- ② (생략)
- 제25조의2(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 리사) ① (생 략)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상수도관망시 설운영관리사가 될 수 없다.
 - 1. (생략)
 -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3. 4. (생략)
 - 5. 제25조의3에 따라 자격이 취소(제25조의2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자격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③ ~ ⑦ (생 략)

<u>.</u>
1. (현행과 같음)
2. 제24조제4항제1호 및 제3호
부터 제5호
3. •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25조의2(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
리사) ① (현행과 같음)
②
1. (현행과 같음)
<u><삭 제></u>
3.•4. (현행과 같음)
5. · 4. (色切片 崔音) 5
 제25조의2제2항제1호

③ ~ ⑦ (현행과 같음)

실내공기질 관리법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의3(시험기관 지정의 결격	제11조의3(시험기관 지정의 결격
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사유)
에 해당하는 자는 제11조의2제	
2항에 따른 시험기관으로 지정	
받을 수 없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u><삭 제></u>
<u>아니한 자</u>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제11조의4에 따라 지정이 취	4
소(이 조 <u>제1호 및 제2호</u> 에	<u>제1호</u>
해당하여 지정이 취소된 경우	
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지	
나지 아니한 자	
5. 임원 또는 기관의 대표자 중	5
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	<u>제1호·제3호 또는 제4호</u> -
<u>정 중 어느 하나</u> 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제11조의4(시험기관의 지정 취소	제11조의4(시험기관의 지정 취소
등) ① 환경부장관은 시험기관	등) ①
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하	

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험기관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2. (생략)
- 3. 제11조의3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제11조의3제5호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 해당 임원이나 대표자를 6개월 이내에 바꾸어 임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 9. (생 략)

② (생 략)

·
1. • 2. (현행과 같음)
3. 제11조의3제1호 및 제3호부
<u>터 제5호</u>
<u>.</u>
4. ~ 9.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악취방지법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6조의5(기술진단전문기관 등	제16조의5(기술진단전문기관 등
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록의 결격사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기	
술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할 수	
없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u><삭 제></u>
<u>아니한 자</u>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제16조의6에 따라 등록이 취	4
소(이 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u>ঝ1호</u>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	
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지	
나지 아니한 자	
5.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4호	5 <u>제1호·제3호 또</u>
<u>까지의 어느 하나</u> 에 해당하는	<u>는 제4호</u>
사람이 있는 법인	
제16조의6(기술진단전문기관의	제16조의6(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취소 등) ① 환경부장관은	등록취소 등) ①
기술진단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	

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5. (생 략)

- 6. 제16조의5제1호부터 제3호와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게 된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에 제16조의5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임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7. (생략)
- ② (생 략)

,,
1. ~ 5. (현행과 같음)
6. <u>제16</u> 조의5제1호 · 제3호 또는
<u>제5호</u>
<u>.</u>
7. (현행과 같음)
, _ , ,
② (현행과 같음)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6조의3(사육시설등록자의 결	제16조의3(사육시설등록자의 결
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격사유)
나에 해당하는 자는 사육시설	
등록자가 될 수 없다.	<u>.</u>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u><삭 제></u>
아니한 자	
3. • 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제16조의8(등록의 취소 등) ① 환	제16조의8(등록의 취소 등) ①
경부장관은 사육시설등록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되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6조의3제1호부터 제3호까	2. <u>제16조의3제1호 또는 제3호</u> -
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	
당하게 된 경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6조의9(권리·의무의 승계 등)	제16조의9(권리・의무의 승계 등)
① 사육시설등록자가 사망하거	①
나 그 시설을 양도한 때에는	
그 상속인 또는 양수인은 그에	
따른 사육시설등록자의 권리・	

의무를 승계한다. 이 경우 그 상속인이 제16조의3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계 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시 설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여 야 한다.

② (생략)

- 제60조(야생생물 보호원의 결격 자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야생생물 보호원이 될 수 없다.
 - 1. (생략)
 -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아니한 사람
 - 3. 4. (생략)

제16조의3제1호 또는 제
<u>3₹</u>
② (현행과 같음)
제60조(야생생물 보호원의 결격
사유)
1. (현행과 같음)
<삭 제>

3. • 4. (현행과 같음)

지하수법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제23조(결격사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	
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의 등록	
을 할 수 없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u><삭 제></u>
<u>아니한 자</u>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6.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5호	6 <u>제1호 및 제3호부</u>
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u>터 제5호</u>
사람이 있는 법인	
제25조(등록의 취소 등) ① 시장	제25조(등록의 취소 등) ①
・군수・구청장은 지하수개발	
·이용시공업자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지하수개발 이용시공업	
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	
만, 제1호·제4호·제5호 및 제	
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	
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2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4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에 제23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3개월 이내에 해당 임원을 교체임명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5. ~ 8. (생략)

②·③ (생 략)

- 제28조(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결 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27조제1 항에 따른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 1. <u>제23</u>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2. 제29조제1항에 따라 지하수 영향조사기관의 등록이 취소 (제23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 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지 나지 아니한 자
 - 3. (생략)

 <u>제23조제1호</u> <u>및 제3호부터 제5호</u>
5. ~ 8.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28조(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결
격사유)
1. 제23조제1호·제3호 또는 제 4호 2
<u>제23조제1호</u>
3. (현행과 같음)

직업안정법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2조(유료직업소개사업의 종사	제22조(유료직업소개사업의 종사
자 등) ① 제19조제1항에 따른	자 등) ①
등록을 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	
을 하는 자는 <u>제38조제1호·제</u>	<u>제</u> 38조제1호 •
<u>2호·제4호</u> 또는 제6호에 해당	<u>제4호</u>
하는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	
니 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38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제38조(결격사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	
업소개사업의 신고·등록을 하	
거나 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u><삭 제></u>
<u>아니한 자</u>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7. 임원 중에 <u>제1호부터 제6호</u>	7 <u>제1호 및 제3호부</u>
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u>터 제6호</u>
자가 있는 법인	

토양환경보전법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3조의3(토양관련전문기관의	제23조의3(토양관련전문기관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결격사유)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토양관	
련전문기관으로 지정될 수 없	
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u><삭 제></u>
<u>아니한 사람</u>	
3. 제23조의6에 따라 지정이 취	3
소(이 조 <u>제1호 또는 제2호</u> 에	<u>제1호</u>
해당하여 지정이 취소된 경우	
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지	
나지 아니한 자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임원 중에 <u>제1호부터 제4호</u>	5 <u>제1호・제3호 또</u>
<u>까지의 어느 하나</u> 에 해당하는	<u>는 제4호</u>
사람이 있는 법인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허가의 결격사유) 다음 각	제8조(허가의 결격사유)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는 제7조에 따른 근로자파견사	
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
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는 피한정후견인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u>사람</u>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폐기물관리법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의4(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제13조의4(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의 지정 등) ① ~ ⑦ (생 략)	의 지정 등)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 제1항에 따른 재활용환경성	8
평가기관의 결격사유에 관하여	
는 제26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u>제26조제1호·제3호·제4호</u> -
및 제6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폐기물처리업"은 "재활용환경	
성평가기관"으로, "허가"는 "지	
정"으로 본다.	
제26조(결격 사유) 다음 각 호의	제26조(결격 사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폐	
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거나	
전용용기 제조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u><삭 제></u>
아니한 자	
3. ~ 5의2. (생 략)	3. ~ 5의2. (현행과 같음)
6. 임원 또는 사용인 중에 <u>제1</u>	6 <u>利1</u>
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5호의	호, 제3호부터 제5호
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있는 법인 또는 개인사업	
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7조의2(지원협의체의 구성기	제17조의2(지원협의체의 구성기
준 및 기능 등) ① 지원협의체	준 및 기능 등) ①
는 해당 폐기물처리시설 소재	
지의 특별자치시 · 특별자치도	
・시・군・구의회 의원, 주민대	
표 및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	
가 가운데 폐기물처리시설 설	
치기관이 관할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구청장 및 특별자치시·특별자	
치도・시・군・구의회와 협의	
하여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	
원협의체의 구성원이 될 수 없	,
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선고	<u>1. 피성년후견인</u>
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	
한 자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하수도법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9조의3(결격사유) 다음 각 호	제19조의3(결격사유)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의 등록	
을 할 수 없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u><삭 제></u>
<u>아니한 자</u>	
3. • 4. (생 략)	3. • 4. (현행과 같음)
5.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4호	5 <u>제1호·제3호 또</u>
<u>까지의 어느 하나</u> 에 해당하는	<u>는 제4호</u>
사람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제19조의4(등록취소 등) ① 환경	제19조의4(등록취소 등) ①
부장관은 제19조의2제1항제1호	
에 따라 등록한 관리대행업자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	
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	
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	
1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
한다.	

- 1. ~ 6. (생략)
- 7. 제19조의3제1호부터 제3호까 지 또는 제5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제19조의3제5호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가 6 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 어 임용하는 경우는 제외한 다.

8. (생략)

②・③ (생략)

- 제19조의6(관리대행업자의 지위 승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관리대 행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다만,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19조의3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 3. (생략)
 -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이 제19조의3제1 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나 제1항에 따라 지위를 승계한 법인 또는 단체가 제19조의3제

1. ~ 6. (현행과 같음)
7. <u>제19조의3제1호·제3호</u>
•
8.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19조의6(관리대행업자의 지위
승계) ①
0/11/ 1
,
<u>제19조의3제1호·제3호</u>
<u>또는 제4호</u>
1. ~ 3. (현행과 같음)
②
<u>제19조의3제1</u>
<u>호·제3호 또는 제4호</u>

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싱	-속
개시일・양수일 또는 합병일	부
터 6개월 이내에 다른 사람	-에
게 이를 양도하거나 그 임원	을
교체 임명하여야 한다.	

③ (생략)

- 제20조의3(기술진단전문기관 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기 술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할 수 없다.
 - 1. (생략)
 -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3. (생략)
 - 4. 제20조의4에 따라 등록이 취소(이 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5. 임원 중에 <u>제1호부터 제4호</u> 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제20조의4(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취소 등) ① 환경부장관은 기술진단전문기관이 다음 각

	_
	-
	•
③ (현행과 같음) 제20조의3(기술진단전문기관 등 록의 결격사유)	
 1. (현행과 같음) <u><삭 제></u>	_
3. (현행과 같음) 4	
4 <u>제1호</u>	_
	_
5 <u>제1호·제3호 또</u> 는 제4호	-
 제20조의4(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취소 등) ①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 1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 5. (생략)
- 6. 제20조의3제1호부터 제3호까 지 또는 제5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법인 또는 단체의 임원 중에 제20조의3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6 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하는 경우에는 취소하지 아니한다.
- 7. (생략)
- ② (생략)

제21조(기술진단전문기관의 지위 저 승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기술진 단전문기관의 지위를 승계한다. 다만,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20조의3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

1. ~ 5. (현행과 같음)
6. <u>제20조의3제1호·제3호</u>
<u>.</u>
7.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세21조(기술진단전문기관의 지위
승계) ①
<u>제2</u> 0조의3제1호·제3
호 또는 제4호

<u>나</u>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 1. ~ 3. (생략)
-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이 제20조의3제1 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나 제1항에 따라 지위를 승계한 법인 또는 단체가 제20조의3제 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 개시일・양수일 또는 합병일부 터 6개월 이내에 다른 사람에 게 이를 양도하거나 그 임원을 교체 임명하여야 한다.
- ③ (생 략)

제48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분 뇨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 1. (생략)
-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u>아니한 자</u>
- 3. (생략)
- 4. 이 법에 따라 분뇨수집 · 운
 반업의 허가가 취소(이 조 제
 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1. ~ 3. (현행과 같음) ②
제20조의3제1
호·제3호 또는 제4호
③ (현행과 같음)
제48조(결격사유)
1. (현행과 같음)
<u><삭 제></u>
3. (현행과 같음)
4
<u>제1</u>
<u>\$</u>

허가가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자로서 그 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5.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사람이 있는 법인
- 제49조(허가의 취소 등) ① 특별
 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
 장・군수・구청장은 분뇨수집
 ・운반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
 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9호
 또는 제12호에 해당하는 때에
 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 1. ~ 8. (생략)
 - 9. 제48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5호에 해당하게 된 경 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에 제48조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이 있는 경우 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교체 임명한 때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u>제</u> 1호·제3호 또
J <u>MIS · MJS I</u>
는 제4호
,
제49조(허가의 취소 등) ①
M43±(M/14 H± 8) (I)
1. ~ 8. (현행과 같음)
9. <u>제48조제1호·제3호</u>
5. <u>14002112 1402</u>
·
•

12. · 13. (생략)

② (생략)

제54조(등록의 취소 등) ① 특별
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
장・군수・구청장은 처리시설
설계・시공업자, 처리시설제조
업자 또는 처리시설관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
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8호부터 제
11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
다.

- 1. ~ 9. (생략)
- 10. 제51조제4항·제52조제6항 또는 제53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u>제48조제1호</u> 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5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 제48조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교체 임명한 때에는 그러하

12・1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54조(등록의 취소 등) ①
,
•
1 0 (취되게 하죠)
1. ~ 9. (현행과 같음)
10
<u>제48</u> 조제1호 •
<u>제3호</u>

지 아니하다.	
11. ~ 15. (생 략)	11. ~ 15.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화학물질관리법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0조(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제30조(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결격사유)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유해화	
학물질 영업을 할 수 없다. 다	
만, 제4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	
우에는 그 취소된 해당 유해화	
학물질 영업의 경우에 한정하	
여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할 수	
없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u><</u> 삭 제>
아니한 자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제35조에 따라 허가가 취소	4
(이 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u>제1호</u>
해당하여 허가가 취소된 경우	
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3호	5 <u>제1호 또는 제3호</u>
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제35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의	제35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의

취소 등) ① 환경부장관은 유 해화학물질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 1. ~ 4. (생략)
- 5.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제30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법인의임원 중 제30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 6. (생략)
- ②・③ (생 략)

제37조(권리·의무의 승계) ① 유 저 해화학물질 영업자가 사망하거나 그 영업을 양도한 때 또는법인이 합병한 때에는 그 상속인·양수인 또는합병후 존속하는법인이나합병에 따라설립되는법인은 허가에 따른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이경우그상속인이 제30조제1호부터 제3호

취소 등) ①
1. ~ 4. (현행과 같음)
5
<u>제30</u> 조제1호 또는 제
<u>3₹</u>
<u>.</u>
6.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베37조(권리·의무의 승계) ①
110711(119 911 971)
제30주제1ㅎ 또는 제3ㅎ

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90일 이내	
에 그 사업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② ~ ④ (생 략)	2 ~ 4

② ~ ④ (현행과 같음)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5조(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	제15조(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
① ~ ③ (생 략)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4
해당하는 자는 제1항이나 제2	
항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 또는 신고를 할 수 없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u><삭 제></u>
아니한 자	
3. 제5항에 따라 환경전문공사	3
업자의 등록이 취소(이 항 <u>제</u>	<u>제1</u>
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u>ই</u>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	
다)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	
니한 자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5. <u>제1호·제3호 또는 제4호</u>
<u>하나</u> 에 해당하는 임원이 있는	
법인	
⑤・⑥ (생 략)	⑤·⑥ (현행과 같음)
제16조의4(환경컨설팅회사의 등	제16조의4(환경컨설팅회사의 등
록) ① (생 략)	록) ① (현행과 같음)
② 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2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회 사는 환경컨설팅회사로 등록할 수 없다.

- 1. (생략)
-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 <삭 제> 권되지 아니한 자
- 3. 4. (생략)

•	

1. (현행과 같음)

3. • 4. (현행과 같음)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환경측정기기검사기관의	제13조(환경측정기기검사기관의
지정 등) ①・② (생 략)	지정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③
해당하는 자는 환경측정기기검	
사기관의 지정을 받을 수 없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u><삭 제></u>
<u>아니한 자</u>	
3. • 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5. 임원 중 <u>제1호부터 제4호까</u>	5 <u>제1호·제3호 또는</u>
<u>지의 어느 하나</u> 에 해당하는	<u>제4호</u>
사람이 있는 법인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환경분쟁 조정법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	제9조(결격사유)
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	
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	<u>견인</u>
지 아니한 사람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환경영향평가법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5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제55조(결격사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환	
경영향평가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u><삭 제></u>
아니한 사람	
3. 제58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	3
(이 조 <u>제1호 또는 제2호</u> 에	<u>সা1ই</u>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	
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2년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라 등	
록이 취소된 경우는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대표자 또는 임원 중 <u>제1호</u>	5 <u>제1호</u>
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	<u>• 제3호 또는 제4호</u>
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	
인	
제63조(환경영향평가사) ① (생	제63조(환경영향평가사) ① (현행
략)	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②

해당하는 사람은 환경영향평가	
사가 될 수 없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u><삭 제></u>
아니한 사람	
3. • 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5. 제65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5
사의 자격이 취소(이 항 <u>제1</u>	
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자	<u> </u>
격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	

④ (현행과 같음)

다)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

한 사람

④ (생 략)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의3(결격사유) 다음 각 호	제11조의3(결격사유)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통합허가대행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u><삭 제></u>
<u>아니한 사람</u>	
3. 제11조의7에 따라 등록이 취	3
소(이 조 <u>제1호 또는 제2호</u> 에	<u>제1호</u>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	
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2년	
(제11조의7제1항제4호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6개월)	
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임원 중 <u>제1호부터 제4호까</u>	5 <u>제1호·제3호 또는</u>
<u>지의 어느 하나</u> 에 해당하는	<u> 제4호</u>
사람이 있는 법인	